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1206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안성진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철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B과 피고 사이에 2022. 5. 2. 체결된 24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5. 11. 17. 및 1997. 2. 10. 원고와 3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거나 어음할인을 받았다가 1997. 12. 2.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127,807,507원을 대위변제토록 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에 관하여 세 차례 판결 또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25. 선고 98가단19091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가단1040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5.자 2019차전19249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4. 24.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570,365,757원에 이른다.

라. 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22. 5. 2.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고 2022.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5. 2. 현재 B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2억 4,500만 원은 사실상 B의 재산으로, B이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5. 2.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거나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선택적으로 사해행위인 B과 피고 사이의 2022. 5. 2.자 금전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9,500만 원의 범위에서 구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부당이득 2억 4,500만 원에 대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9,500만 원을 대위행사한다.

3. 판단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로 확인되는 B의 자녀들 및 피고 명의의 각 부동산¹⁾ 취득 과정, 과세대상인 피고의 소득 수준을 내세워 이들은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B로부터 유래되었고, 그 결과 그 처분대금도 모두 B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자금이 B의 자녀들이나 피고의 재원이 아님이 밝혀진 다 하여 그것이 곧 B의 재원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B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나 소득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증명까지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데 소요된 자금이 B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별지

1)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F건물, G호경기도 부천시 H건물, I호